

제315회 임시회
2012.10.18.(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0. 18. (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윤성옥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2년 9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10월 10일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수완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예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내복귀기업’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상시고용인원 근로기간 변경 : 3개월간→1년간(안 제2조)
-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36조)
- 지원 등의 취소 기간 변경 : 7년→5년(안 제37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송장섭)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예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제2조제14호 가, 나, 다 목의 “3개월간”을 각각 “1년간”으로 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

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와 제7호의 “7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p> <p>10. ~ 13. (생략)</p> <p>1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p> <p>10. ~ 13. (현행과 같음)</p> <p>14. ----- ----- ----- -----</p>

현 행	개 정 안
<p>「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 ----- ----- ----- -----.</p>
<p>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 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u>3개월간</u> 평균인원</p>	<p>가. ----- ----- ----- ----- ----- <u>1년간</u> -----</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u>3개월간</u> 평균인원</p>	<p>나. ----- ----- ----- ----- ----- <u>1년간</u> -----</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u>3개월간</u> 평균인원</p>	<p>다. ----- ----- ----- ----- ----- <u>1년간</u> -----</p>

현 행	개 정 안
<p>15. ~ 18. (생략)</p> <p>(신설)</p>	<p>15. ~ 18. (현행과 같음)</p> <p>19.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p> <p>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p> <p>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p> <p>다. 국내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 제26조 (생 략)</p> <p>제27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 ~ 제26조 (현행과 같음)</p> <p>제27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 ~ 제35조(생 략)</p>	<p>제28조 ~ 제35조(현행과 같음)</p>
<p>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생 략)</p>	<p>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투자 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p> <p>-----</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u>7년</u>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p>	<p>2. ----- -----<u>5년</u>----- -----</p>
<p>3. ~ 6. (생략)</p>	<p>3. ~ 6. (현행과 같음)</p>
<p>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u>7년</u>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p>	<p>7. ----- -----<u>5년</u>----- -----</p>
<p>8. (생략)</p>	<p>8.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 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감축(이하“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5. ~ 8. (생략)

9.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0 ~ 22. (생략)

23.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11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의해 기업이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 그 처리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3. 제14조제6항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4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